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가. 용역명: 2026년 검단구 중봉대로 외 2개노선 재난대비 도로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위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봉대로, 대곶검단로, 대촌로 일원
 - 용역내용: 폐아스콘(노면 파쇄물) 운반 $V = 799\text{m}^3$ ($W = 1,878\text{ton}$)
 - 운반장소: (주)검단아스콘 [서구 도담3로 9(오류동)]
-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기초금액: 금20,493,000원(추정가격: 18,630,000원, 부가가치세: 1,863,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마.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 도로관리부 도로보수2팀(032-440-5315)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 가.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7. 14.(화) 10:00 ~ 2026. 7. 16.(목) 10: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6. 7. 16.(목)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pm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천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이행사항 안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0. 기타 유의사항

-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하도급현황, 선금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소회하여야 합니다.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마.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 바.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기술적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도로보수2팀 (032-440-5315)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032-440-514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 달성과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